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공고 제2021-85호

재단법인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시설장·종사자 공개채용 공고

재단법인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소속시설 시설장·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9월 7일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위	채용형태	채용 인원
총 계				6명
당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아시설)	원장	보육행정 3급	계약직	1명
	보육사	보육행정 6급	정규직	4명
	임상심리치료사	보육행정 6급	정규직	1명

○ **채용 형태**

- 원장 : 계약직(임용일로부터 최대 5년)
- 보육사/임상심리치료사 :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수습기간 후 근무성적 평정을 통해 최종 채용여부 확정

2 근무조건 및 직무내용

채용분야	근무조건	직무내용
원장	**(근무시간)** 주5일, 주40시간 **(근무장소)** 학대피해아동쉼터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총괄 · 예산, 회계, 인사, 시설운영 및 관리 등
보육사	**(근무시간)** 3교대 근무 **(근무장소)** 학대피해아동쉼터	- 학대피해아동(일시 보호, 양육, 교육) 서비스 제공 등
임상심리 치료사	**(근무시간)** 주5일(월~금), 8시간 **(근무장소)** 학대피해아동쉼터	- 상담 및 심리치료 등

※ 사업 수행 여건상 근무조건이 변동될 수 있음

□ **보수기준**

- 「충청남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3 응시 자격요건

○ **공통기준**

- 응시연령은 18세 이상(공고일 기준) 만 60세 이하, 시설장의 경우 만 65세 이하인 자.

※ 직원의 신규채용 하한 나이는 18세로 하며, 정년이 1년 미만 남았을 때는 채용할 수 없다.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13조)

- 성별, 학력에 제한은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고일 기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자격기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15에 따라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채용분야	자격기준
원장	- 채용 이후 당진시 주소지 이전이 가능한 사람(미 이행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사람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보육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임상심리치료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심리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붙임 3]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가산 및 우대사항

대 상		우대자격요건	가산 점수	증빙서류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만점의 5~10% *중복 시 유리한 한가지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장애인	5점	장애인증명서
지역인재		충남도내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예정자 포함)	5점	졸업증명서
우대사항	지역인재	공고일 이전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대	-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우대 (실제 차량 운행 가능자)	-	면허증 사본
	관련 경력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 관련 시설 근무 경력 우대	-	경력증명서

○ 결격사유

• 공통기준 :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14조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채용분야	결격사유
원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보육사, 임상심리 치료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 위 요건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채용일정 및 제출서류

○ 채용일정

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	△ (채용공고) 2021.9.7.(화) ~ 2021.9.22.(수) / 16일간 ※ 사회서비스원·道 홈페이지 및 채용관련 사이트에 공고 △ (원서접수) 2021.9.7.(화) ~ 2021.9.22.(수) 18:00까지 - 전자우편접수 : recruit@cn.pass.or.kr
1차 심사(서류전형)	△ 2021.9.23.(목) ※ 분야별 자격요건, 경력 및 원서 등 부적격 사항 확인
서류합격자 발표	△ 2021.9.24.(금)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2차 심사(면접심사)	△ 2021.9.28.(화)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2021.9.29.(수)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임용예정일	△ 2021. 10월 이후

※ 전형일정 및 시간의 경우 변동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예정일 이전까지 신체검사서 제출 및 결격사유확인 등 진행 예정

○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비고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자기검증기술서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이용 동의서	· 양식교부 :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s://cn.pass.or.kr) ※ 블라인드 채용 실시에 따라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필수**
주민등록등본 · 초본	· 공고일 이후 발행, 주소변동 기재 포함	**필수**
자격증	· 자격증 사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필수**
졸업증명서	· 졸업증명서 사본 - 임상심리치료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심리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필수**
경력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 및 재직증명서 일치) ·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필수**
관련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 및 정부24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지역인재우대)** 졸업증명서	해당자
군복무증명서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필수(초본확인 불가한 경우 제출)	해당자
졸업 및 성적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가족관계증명서	· 최종학력 및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준용한 신체검사서 · 범죄경력(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포함) 조회 실시 · 가족관계증명서	최종 합격자에 한함

5 세부 채용절차

○ 서류전형

- 공고기간 : 2021. 9. 7.(화) ~ 9. 22.(수) 16일간(휴일 포함)
- 접수기간 : 2021. 9. 7.(화) ~ 9. 22.(수) 18:00까지(마감시간 엄수)
- 접수방법 : 전자우편(recruit@cn.pass.or.kr) 접수
- 서류합격자 발표 : 2021. 9. 23.(목) 예정 /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 응시자격 기준을 근거로 적격여부 판단

※ 입사지원서 상 응시자격 적격 여부 미증명·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 면접시험

- 면 접 일 : 2021. 9. 28.(화) 예정 ※ 면접장소 및 시간은 면접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 면접방법 : 면접위원별 질의 응답식 **심층면접(블라인드 방식)** 실시

※ 신분증 필수 지참

- 채용분야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계	품행, 성실성 및 책임성	의사소통력 및 대인관계성	전문성 및 실무경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전문지식 및 업무수행능력
100점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 합격자발표

- 최종합격 : 2021. 9. 29.(수) /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합격자발표 후 10일 이내 임용에 응하지 않거나, 부정합격,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 관계 법령 및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취소

※ 임용 후보자 미등록 시, 후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임용 시 서류 원본 제출해야 하며 기타 필요서류는 별도 제출

6 응시자 유의사항

○ 본 공고문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격요건 및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응시원서 제출 전에 자격증 등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자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등과 공고내용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 후에는 기재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채용의 전 과정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력·출신지·성별 등 편견이 개입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면접시험에는 자기소개서 기반 면접위원별 질의응답식 심층면접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채용분야별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5년 이상 응시가 제한됩니다.

○ 면접당일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지참하고, 면접시작 30분전까지 면접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의 채용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첨부제출 자료 등은 해당되지 않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용확정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 시 본인 확인 후 반환하며,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기타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사회서비스원 사업담당자(☎041-330-246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결격사유)

[공통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3.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4.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7.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8.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9.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2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23.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2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의 "취업심사대상자" 중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의 취업에 대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못한 자

붙임2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① 시·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4. 제18조제2항·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
5. 제21조를 위반한 사람
6.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은 시·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 26.>

③ 제1항에 따라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붙임3 임상심리사 자격 관련

종류	자격명	시행기관	구분
심리평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보건복지부	1급, 2급
	임상심리사	한국산업인력공단	1급, 2급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임상심리학회	없음
놀이치료	놀이치료사	한국놀이치료학회	1급, 2급, 3급
미술치료	임상심리상담사 (미술치료사)	한국미술치료학회	수련감독, 미술치료전문가, 미술치료사
	임상미술심리전문가	한국심리치료학회	-
음악치료	음악치료사	한국음악치료학회	1급. 2급, 준2급
모래놀이치료	음악중재전문가	전국음악치료사협회	-
언어치료	모래놀이치료사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	전문가, 1급, 2급
인지학습치료	언어재활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급, 2급
	인지행동지도전문가	한국인지행동심리학회	1급, 2급
심리상담	상담심리사	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2급
	청소년상담사	한국산업인력공단	1급, 2급, 3급
	전문상담사	한국상담학회	1급, 2급
	부부가족상담전문가	한국가족치료학회	슈퍼바이저, 1급, 2급